

담당자 및 연락처

목사를 상대로 한 제보의 경우, 캐나다 장로교 사무처 사무원에게 연락하십시오.

(name)

(address)

(phone number)

(email)

교회의 리더나 성도를 상대로 한 제보의 경우, 담당교회 목사님에게 연락하십시오.

(name)

(address)

(phone number)

(email)

성폭력 혐의자의 이름이나 직위를 잘 모를 경우에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Associate Secretary
Ministry and Church Vocations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50 Wynford Drive
Toronto, ON M3C 1J7

1-800-619-7301 ext. 264
mcv@presbyterian.ca

캐나다 장로교의 성폭행에 관한 정책은 Presbyterian.ca/mcv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에 관한 자료나 소책자를 문서로 원하신다면 밑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장로교
1-800-619-7301
resources@presbyterian.ca

이 소책자는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가 더 필요하시면 presbyterian.ca/mcv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성폭력 및 성추행에 관한 방침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의 정의를 구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안식처

교회 및 이하 산하조직은 지역사회 안식처이며, 성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에 예수님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므로 각종 행사를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모든 단체는 이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모든 봉사자 특히 성직자, 지도자, 임직원, 자원 봉사자 등은 성(性)적 관련 품행, 직권 및 직위를 기독교 윤리강령에 따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방침

캐나다 장로교는 교회 성직자, 임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에 의한 일체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태의 심각성에 기인하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성추행이나 성추행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교회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와 함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할 것이며, 제보자와 성폭력 혐의자를 공평正大하게 대할 것입니다. 모든 제보는 성폭력 및 성추행에 관한 교회 방침에 의거하여 조사되고 처리될 것입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원치 않는 성(性)적 접촉
- ▶ 간음, 성기 접촉, 애무, 추행, 성(性)적 함의를 포함한 언어, 음란물 전시행위
- ▶ 캐나다 형법에 규정된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 및 성행위
- ▶ 성추행
- ▶ 배우자 폭력행위

성추행이란?

성추행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성(性)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회적 또는 상습적인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결정권자의 직위를 이용한 성(性)적 요구
- ▶ 직위자의 성(性)적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을 이용한 보복 및 협박 행위

지도자들에 대한 제한

교회 리더의 직위는 권한과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 활동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성(性)적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 ▶ 청소년부 리더들은 청소년부의 일원들과의 데이트가 허용되지 않으며,
- ▶ 목사의 경우 사목활동 대상자와의 일체의 성(性)적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폭력이
용납 되지
않는
곳입니다.

피해 대상자의 경우

- 성폭력 혹은 성추행의 피해가 있다고 여겨질 때
- ▶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 ▶ 미소나 사과의 표시 없이 정확한 거부 의사를 당사자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 ▶ 성폭력 및 성추행의 사건 발생 시, 발생한 사건, 행동, 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후, 본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해자로부터의 서신이나 쪽지 등)와 함께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십시오.
 - ▶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연락처는 다음 장을 참조 하십시오.)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조치 될 것입니다.

만일 타인의 성폭력이나 성추행 피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 ▶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 ▶ 해당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다음 장을 참조하십시오.)

만일 다른 사람이 본인을 상대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피해를 토로할 경우:

- ▶ 캐나다 장로교 해당 기관이나 해당 교회에 위 사실이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연락처는 다음 장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제보자들에게 알림

캐나다 장로교는:

- ▶ 교회 방침에 의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 규명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피해자에게는 피해보자와 피해보자의 가족들로부터 교회 차원의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 ▶ 도움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조언을 해 드릴 것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피해보자는:

- ▶ 서로 협상절충 하려 해서는 안 되며
- ▶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